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53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이강일·이재관·김남근

김문수・정성호・정준호

민병덕 · 김남희 · 김우영

황운하 • 박정현 • 염태영

송재봉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 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.

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 이 계속되고 있는데,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 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, 광고비, 배달비 등의 각종 비 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 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.

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,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 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, 제45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"온라인플랫폼사업자"란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하여 제3자의 재화·용역 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(이하 "재화등"이라 한다)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이나 거래 규모가 일정한 금액 이상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- 1의3. "온라인입점업체"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망의 중개를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5조의2(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등 부과금 기준 제공의무 등)
 - ①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및 금액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- 1. 판매수수료, 중개수수료 등의 수수료

- 2. 광고비
- 3. 그 외 배달비, 부가서비스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
- ②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입점업체의 총매출 규모, 거래건수, 성실도 등의 기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온라인입점업체와의 협의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며, 거래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특정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입점업체로 구성된 단체(이하 "온라인입점업체단체"라 한다)는 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, 온라인입점업체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온라인입점업체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금 현황을

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.

-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정하여 고시한다.
- ⑧ 제2항 단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기준, 제6항의 부과금 현황 공시, 제7항의 수수료율 상한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.

제49조제1항 중 "제46조"를 "제45조의2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5항·제6항, 제46조"로, "재판매가격유지행위"를 "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, 재판매가격유지행위"로 한다.

제50조제1항 본문 중 "제46조"를 "제45조의2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5 항·제6항, 제46조"로 한다.

제13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부과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정거 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공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الد الد	الم الح
현 행 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"온라인플랫폼사업자"란
	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
	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
	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
	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
	같다)을 이용하여 제3자의 재
	화 · 용역 또는 이를 이용하거
	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(이
	하 "재화등"이라 한다)의 거
	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
	수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로
	서 매출이나 거래 규모가 일
	정한 금액 이상인 자 등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1의3. "온라인입점업체"란 온라
	인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
	정보통신망의 중개를 통하여
	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
	말한다.

2. ~ 20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2. ~ 20. (현행과 같음)

 제45조의2(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
 수수료 등 부과금 기준 제공의
 무 등) ① 온라인플랫폼사업자
 는 온라인입점업체에게 부과하
 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
 여 구체적 산정기준 및 금액을
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
 제공하여야 한다.
 - 판매수수료, 중개수수료 등
 의 수수료
 - 2. 광고비
 - 3. 그 외 배달비, 부가서비스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
 - ②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 인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을 정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 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온라인플랫폼사업 자는 온라인입점업체의 총매출 규모, 거래건수, 성실도 등의 기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.
 - ③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제1

항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온라인입점업체와의 협의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과 절차 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하며, 거 래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특정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입점업체로 구성된 단체(이하"온라인입점업체단체"라 한다)는 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성 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, 온라인입점업체단체의 구성· 가입·활동 등을 이유로 온라 인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온라인입점업체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 니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제1

제49조(시정조치)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45조제1항·제2항, 제 46조,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사업자(제45조제2항 및 제4 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 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)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, 재판매가 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,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, 계약조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 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.
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온 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 에 대한 상한을 정하여 고시한 다.

⑧ 제2항 단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기준, 제6항의 부 과금 현황 공시, 제7항의 수수 료율 상한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시로 정한다.

제49조(시정조치) ①
<u>제4</u>
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
제5항 · 제6항, 제46조
온라인입점업체에게
부과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
위반사항, 재판매가격유지행위-

항의 삭제, 시정명령을 받은 사 실의 공표, 그 밖에 필요한 시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50조(과징금) ① 공정거래위원 제50조(과징금) ① -----회는 제45조제1항(제9호는 제 외한다), 제46조 또는 제48조를 -----제45조의2제1항·제2항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·제3항·제5항·제6항, 제46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

제130조(과태료) ① 사업자, 사업 자단체,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

제	1	<u>.</u>	3(0	2	ス ユ		(ī	1	-]	E	H	į		-)		(1)		-		_	_	_	-		 _	_	_	_	_	-
	_	-			_		_	_	_		_	_	_		_	_		_	_	_		_	_	_		_		_	_	 _	_	_	_	_	

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억원 이하, 회사·사업자단 체·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 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6. • 7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·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5의2.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 여 부과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 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하고 공시한 자
- 6. 7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